

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0.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030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11. 13(금)
- 라. 회부일자 : 2020. 11. 17(화)

##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명시(안 제4조)
  - 1)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 금액(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 2)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
  - 3)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의 청구
-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제46조
- 2) 「지방재정법」제87조
- 3)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
-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 제4조의2
- 5)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 6) 「공무원 여비 규정」제29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자 2020. 11. 13.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

### 나. 주요 개정 내용

○ 안 제4조에서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

#### 표1 안 제4조 신설 내용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부정 수

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
-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의 청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음.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 다. 검토 결과

이번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여비 부정 수령액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9. 18.] [대통령령 제29168호, 2018. 9. 18., 타법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2018. 2. 20.>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3. 5.,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14. 3. 5.]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조정·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행정지원과 인사팀 박지환
연 락 처	2627 - 1016